

의안번호	2202064
의 퇴 인	한병도의원
회 답 일	2024. 9. 24.
추계번호	24D221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현행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증액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유효기간을 폐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조원 등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간 총 13조원(연평균 1조 3,000억원)임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34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지방소멸대응기금 정부출연금 출연금모 상향 및 유효기간 폐지 (안 제23조 및 법률 제18545호 부칙 제2조 삭제)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30,000	13,000
	2030	2031	2032	2033	2034		
	10,000	10,000	20,000	20,000	20,0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제1호 및 법률 제18545호 부칙(유효기간) 제2조 삭제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을 추가 확보(제1호) : 정부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증액 - 2031년 12월 31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유효기간을 삭제	의무규정
2	안 제2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제3호 신설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에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수익금을 추가	의무규정

3	안 제28(지방소멸 대응기금의 성과분석 및 공개)	-기금관리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직전 회계연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와 직전 5회계연도 기간의 중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함 (현행) 직전 회계연도의 성과 분석 공개 (개정안) 직전 회계연도와 직전 5회계연도의 성과 분석 공개	의무규정
---	-----------------------------	--	------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3조(지방소멸 대응기금의 재원) 및 법률 제18545호 부칙(유효기간) 제2조 삭제	○	-
2	안 제23조(지방소멸 대응기금의 재원) 제3호 신설	-	미대상: 개정안은 한병도의원이 대표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66)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복권수익금의 의무 배분율을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복권수익금 의무 배분 대상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추가하려는 것임. 다만, 복권수익금의 법정배분율 조정은 배분 기관별 금액이 달라질 뿐 총액의 변동을 야기하지 않음. 따라서 복권수익금 의무 배분 대상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추가되어도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지 않으므로 미대상 사유에 해당
3	안 제28조(지방소멸 대응기금의 성과분석 및 공개)	-	미대상: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7개 시·도로 구성된 기금관리조합(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하여 업무 수행)에서 관리·운용하고 있으며,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성과를 분석하고 있음.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성과 분석 비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인 정부출연금 1조원으로 집행이 되고 있으므로 성과 평가 횟수가 추가되더라도 추가적인 재정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현행 회계연도마다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증액함에 따라 증액된 정부출연금만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1조원씩¹⁾ 2031년까지²⁾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출연하고 있음
 - 개정안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2조원씩으로 증원하고, 2031년까지로 되어있는 유효기간을 폐지하려는 것임
-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현행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증액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총 13조원임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2025년~2034년 매 회계연도마다 2조원씩 총 20조원임
 - 현행법에 따른 정부출연금은 2025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원씩 총 7조원이 발생하므로, 개정안에 따른 정부출연금에서 현행법에 따른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조원 등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총 13조원임

1) 현행법 제2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1조원
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2) 법률 제18545호 부칙 제2조(유효기간) ① (생략)

②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표 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34년

(단위: 억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현행법에 따른 정부출연금(A)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70,000
	2030	2031	2032	2033	2034	
	10,000	10,000	0	0	0	
개정안에 따른 정부출연금(B)	2025	2026	2027	2028	2029	20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30	2031	2032	2033	2034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C=B-A)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30,000
	2025	2026	2027	2028	2029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2030	2031	2032	2033	2034	
	10,000	10,000	20,000	20,000	20,0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지수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지수현	02-6788-4831	zisu37@assembly.go.kr